

공간관리 세칙

제정 2019. 9. 30.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호서대학교 공간관리규정 제3장에서 정하고 있는 공간관리 등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공간사용료 적용대상)** 사용주체가 사용하는 공간으로 그 분류는 <별표1>에 따르며 이외 적용대상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용주체라 함은 공간을 실제로 사용하는 자(교원, 학과(학부), 대학, 연구소 등)를 말한다.
- 제3조 (기본공간 사용면적 기준)** 기본사용면적 기준은 <별표2>에 따라 산정하여 사용주체별로 기본 배정한다. 기본사용면적은 공간사용료 산정 시에 계상하지 않고, 기본사용면적 기준 초과 시에 초과분에 대하여 공간사용료를 산정한다.
- 제4조 (초과공간 사용면적)** “초과공간 사용면적”은 제3조에 따라 사용주체별로 배정된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의미한다.
- 제5조 (공간 사용면적)** 공간 사용면적은 기본사용면적과 초과공간 사용면적의 합으로 계산한다. 사용주체가 학과(부)인 경우 소속 교원의 공간 사용면적을 합산하여 학과(부) 단위로 계산한다.
- 제6조 (공용시설 공간)** 공용시설 공간은 외부 또는 학내 구성원에게 개방하여 다수의 학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으로 공간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공용시설 공간의 인정은 공간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제7조 (공간사용료 단가 및 부과)** ① 공간사용료 부과기준은 공간관리 규정 제3장 제12조에 따라, 3.3㎡당 월 20,000원을 학기 단위로 부과한다. 단, 학회사무실, 회사 등의 외부사업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3.3㎡당 월 40,000원을 학기 단위로 부과한다.
 ② 공간사용료는 “미부과대상 공간”의 공간정의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와 “부과대상 공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실험실습실 공간으로 분류되고 공간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표 3>에 따라 공간사용료를 산정하여 부과하되, 사용료 부과대상은 해당 공간의 사용주체로 한다.
 ④ 전문연구실로 분류된 공간의 경우 공간사용료를 부과한다. 공간사용료는 사용주체의 연구간접비 30%를 공간사용료로 환산하여 대체할 수 있다. 연구간접비는 사용주체의 전년도 총 연구비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징수한 간접비로 산정한다.
- 제8조 (공간사용료 대체)** ① 학과(부)에 부과된 공간사용료는 사용 교원의 전체 동의를 이루어지면 연구간접비로 대체가 가능하다.
 ② 전문연구실의 공간사용료보다 연구간접비의 환산금액이 클 경우 사용주체는 전문연구실 공간사용료를 적립하거나 공간관리위원회에 공간의 추가 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 (사용료 산정내역 통지)** 공간관리위원회는 해당연도 사용료 산정내역을 사용주체에게 <서식1>에 따라 통지하고, 사용주체는 <서식2>에 따라 사용료 납부(공간반납) 약속서를 관리주체의 확인을 거쳐 지정기일까지 공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조 (사용료 납부 또는 공간 반납)** ① 사용주체는 공간사용료 납부가 불가한 경우 지정기일까지 공간을 반납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전임교원 : 연구비 간접비의 30%

2. 학과(부) : 실험실습비, 학과(부)운영비 등

3. 연구소 : 사업비 또는 연구비 등

② 사용주체가 공간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공간을 지정기일까지 반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기할 수 있다.

제 11조 (이의신청)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주체는 산정내역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조사를 거쳐 산정내역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 12조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2019. 9. 30.)

이 지침은 2019학년도 시범 운영 후 202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공간사용료 적용대상 분류

구분	공간 정의	공간사용료 부과여부	학과평가 반영여부
교수 연구실	교수개인의 연구와 기타 집무가 이루어지는 공간	미부과	반영
학과 사무실	학과(부)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교육조교가 근무하는 공간	미부과	반영
실험실습실	학부생 실험실습 공간 중 정규시간표에 따른 실험실습 교육이 주당 2과목 또는 8시간 이상 배정된 공간	미부과	반영
전문 연구실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자재가 있는 실험실	부과	미반영
대학원/연구원실	전일제 대학원생의 학습과 연구 공간	부과	미반영
기타	세미나실, 교강사실, 학생회실, 실험실습 기자재보관실 등으로 사용하는 학과전용 공간	부과	반영
공용시설공간	외부 또는 학내 구성원에게 개방하여 사용하고, 다수의 학내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및 공간	미부과	반영
연구소 (기본연구소)	학문분야가 유사한 전공의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소로 인문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 과학기술연구소가 이에 해당됨	미부과	미반영
연구소 (교책연구소)	학교의 비전과 발전계획 실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된 연구소	미부과	미반영
연구소 (일반연구소)	특정 학문분야의 대내외적인 학술활동, 공동연구 및 연구비 획득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	부과	미반영
연구소 (산학연구소)	학술연구진흥 및 산학협동육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학, 산업체, 기타민간단체의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특수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된 연구소	부과	미반영

<별표2> 기본사용면적 기준

구분	배정 기준안
교수연구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m² 이내는 교수연구실 공간으로 배정 ● 30m² 이상은 공간관리위원회 검토 후 공간사용료 부과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기준면적 초과시 초과공간에 대한 사용료 부과
학과사무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m² 이내는 학과사무실 공간으로 배정 ● 광역학부제의 경우 모집정원이 100±10명 범위내에서 25m² 이내 추가 배정 (추가 배정은 공간조정위원회 검토 후 공간배정)
대학원/연구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m²/인 기준으로 기본면적 산정

<별표3> 실험실습실 공간사용료 기준

사용 기준		공간사용료
주당 8시간 또는 2과목 이상		미부과
1과목	2시간	공간사용료의 3/4 부과
	4시간	공간사용료의 1/2 부과
	6시간	공간사용료의 1/4 부과

